제15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9 ~ 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09 ~ 2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 ~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9 ~ 4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3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1

제출연월일	2009. 02.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더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어려운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16조제3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2009연도 본예산에 반영(13,000천원)

-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 9,000천원
- 재향군인회 회원 전적지 순례 : 4,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08. 11. 24. ~ 12.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교부절차,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2

제출연월일	2009. 02.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7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116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련 조문(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 등 ⇒ 군수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 의하여(한) ⇒ 따라(른)
(안 제1조,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3항)

○ ~이라 함은 ⇒ ~이란(안 제2조)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2조)

○ 이외 ⇒ 외(안 제2조제2호)

○ 당해 ⇒ 해당(안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 기타 ⇒ 그 밖에(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중복되어 표현이 어색한 “이를”을 삭제(안 제6조,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생략(입법내용의 성질상 군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을 ““회계관계 공무원”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기된자 이외”를 “해당하는 자 외”로, “자치단체장 등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을 “군수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11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을 “군수는”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을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은”을 “군수는”으로,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은”을 “군수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의”를 “군수가”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군수”로, “이를 보관·관리”를 “보관·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게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해당하는 자 외--------- --------- 군수가 ---------- ----------
제3조(재정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생 략)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군수를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 따른 ---------- ----- 1천만원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 그 밖에 ---------- 해당 ----------. ② ---------- 해당 ----------. ③ 군수는 ----------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 ---------- ---------- ---------- 그 밖에 ----------. ② -------- 군수 ---------- ---------- 보관·관리---.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3

제출연월일	2009. 02.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 수승대관광지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나.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관광지” 및 “관람료등”의 약칭을 사용함.

○ 관광지 →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안 제2조)

○ 관람료등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 (안 제8조제1항)

다. 관람료의 징수시기와 관련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

○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안 제4조제6호 신설)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안 제4조제7호 신설)

라. 관람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

○ 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안 제6조제1항)

마. 관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와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

○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법」)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바.「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른)

○ ~의(에) 정하는 → ~로(에서) 정하는

○ ~에 의한다 → ~에 따른다

○ ~의 정의는 → ~의 뜻은, ~(이)라 함은 → ~(이)란

○ 아니한다 → 않는다

○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 그 밖에(의), 이외 → 외

○ 관광지내 → 관광지 안

○ ~할 때에는 → ~하면

○ 붙일 → 부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1. 15. ~ 2009. 2. 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수승대관광지”로,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2조 중 “본 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제6호의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등을”을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지내”를 각각 “관광지 안”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을 “관람료등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관광지내”를 “관광지 안”으로,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중 “관람료”를 “관람료등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재정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로, “붙일”을 “부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례에”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승대관광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
제2조(위치) 본 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69번지 일대(235,479㎡)로 한다.	**제2조(위치)**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조례로 -------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정의)** ---------- 뜻은 ------. 1. -----란 ---------- ----------. 2. -----이란 ---------- ---------- -------. 3. ----이란 ---------- ----------. 4. ----이란 ---------- ---. 5. ---란 ----------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7. “비수기”란 제6호의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6조(관람료징수 등) ① 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관람료징수 등) ① 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 그렇지 않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람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 (생 략)	제7조(시설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 따른다.
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 따른다.
⑤ 유선(보트)장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 따른다.
⑥ 시설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관람료의 예에 의한다.	⑥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관람료등의 면제)** ① ----------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6.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7.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그 밖에 ---------- ------
②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및 눈썰매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관광지 안--------- 관광지 안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 ---------- ---------- ---------- ---------- 관람료등은 ---------- ---------- 않는다.---------- ---------- ---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4. 관광지 안---------- ---------- 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6. 그 밖의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요금표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관람료등의 ----------.
제11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관람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1조(위탁징수)** ① ---------- 인정하면 ------. ② 제1항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 부칠 --------.
제12조(수입금의 사용) ① 이 조례에 정한 관람료등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등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입금의 사용)** ① --- 조례로 --------. ② ---------- 그렇지 않다.
제13조(준용) 관람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준용)** ----------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

제출연월일	2009. 02.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개정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구「교통안전법」(법률 제7516호) 제13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함.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당연직(군 소속공무원, 군의원 등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장 12명), 위촉직(관할 운수단체 지부장 등 관계전문가 6명 내)

○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회의 :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안처리 가능함.

○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등 직책 설치
- 교통안전에 과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둠.

○ 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2009년 본예산에 반영(위원회 참석수당 1,4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09. 1. 21. ~ 2009. 2.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군 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2. 거창군의회 의원
3. 거창경찰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4.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통안전 관련과장
5. 거창소방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6.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장
7. 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장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